

## 경기장 및 관중의 안전에 관한 법적 고찰\*

- 국내 대응 상황과 영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afety Issues of the Spectators at Sports Events

김 봉 철\*\*

Kim, Bong-Chul

#### 목 차

- I. 서 설
- II. 한국에서의 경기장 안전에 대한 대응 상황
- III. 영국에서의 경기장 및 관중의 안전에 대한 법적 대응 노력
- IV. 결 어 - 경기장 및 관중의 안전에 대한 입법 필요성과 대응방향

#### 국문초록

다양한 국제스포츠 행사와 국내 프로스포츠 활성화에 따라서 운동경기의 경기장 안전이 이미 대중화되었다. 그러나 경기장내의 관중의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이 논의된 바 있으나, 이러한 사항들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예방차원의 특별한 법률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해외 프로스포츠 선진국들은 경기장의 사고 예방 및 특정인 관리 법규의 제정을 진행해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관련 법규들은 특정인의 경기장 입장 및 해외출국 등을 제한하는 규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강력

논문접수일 : 2009.12.30

심사완료일 : 2010.1.29

게재확정일 : 2010.2.1

\* 본 논문은 2009년 11월 7일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가 주최한 2009 스포츠법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영국 King's College London(University of London) 법학박사, 한국외대/경기대 강사

한 제재를 부과하거나 예방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축구장 내의 폭력행위 방지와 홀리건 등 특정인 관리를 위한 일련의 법률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최근까지 경기장 내에서의 관중에 대한 큰 사고를 막고 있다. 해외원정 경기에서도 과거와 같이 영국인 홀리건에 의한 폭력행위 등이 과거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국내에서도 영국과 같은 경기장의 사고 예방 및 특정 홀리건 관리 법규의 제정 필요성에 시사하는 바 크다. 다만, 영국 관련법상 금지명령과 같이 특정인의 축구경기장 입장 및 해외출국 등을 제한하는 규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그리고 국민의 자유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이것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영국과 같이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관련 기관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규제명령이 행정제재인가 형사제재인가의 법적 성격도 확정하여 관련 사항과의 조화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경기장안전, 경기장사고, 관중, 야구, 축구, 축구관중법

## 1. 서 설

야구와 축구의 프로리그 출범으로 시작된 국내 프로스포츠 활성화와 서울올림픽 및 월드컵 등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국제스포츠 행사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운동경기의 경기장 관전이 대중화되었다. 이와 같은 경기장 관전의 대중화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하였으나, 경기장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관중의 경기장 난입과 방화 등 폭력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낳고 말았다. 여기에는 경기장의 낙후된 시설, 관중들의 후진적 관전 태도, 선수 및 심판들의 프로의식 결여, 심지어는 군중심리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된 원인들이 제시된 바 있다.<sup>1)</sup>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이 논의된 바 있으나, 여전히 경기장 및 관중의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프로스포츠 선진국들이 경기장의 사고 예방 및 특정인 관리 법규의 제정을

1) 이장영·강효민, "집합행동으로서 경기장 관중폭력 행동에 관한 사례 연구 : 스포츠미디어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00, 333면 이하 또는 김동규·김영갑, "축구관중에 비취진 폭력적 집합행동의 정체 찾기",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20호, 한국사회체육학회 2003, 77면 이하 참고.

진행해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관련 법규들은 특정인의 경기장 입장 및 해외출국 등을 제한하는 규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거나 예방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경기장 안전사고 및 관중의 방화, 폭력사고 등을 살펴보고, 국내의 대응상황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후 영국에서 마련된 축구 관련 경기장 안전 및 관중 폭력 등에 대한 입법사례들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알맞은 구체적인 입법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 II. 한국에서의 경기장 안전에 대한 대응 상황

### 1. 국내에서 발생한 경기장 및 관중 관련 사고사례

국내에서 문제가 된 경기장 및 관중의 안전에 관련된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경기장에 설치된 특정 장비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거나, 경기중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고도 있다. 또한 관중의 난동이나 폭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으며, 선수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선수들간의 다툼이나 선수와 관중 사이의 다툼으로 사고가 발생한 예도 있다. 이미 많은 사건들이 존재하였으나, 국내의 대표적인 경기장 내 사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경기장의 시설 및 관리와 관련된 사고사례

사이클 경기장 앞 광장입구의 도로 위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바리케이드 2개를 설치하고, 그 사이의 2m 공간에 윗부분끼리 한 줄의 쇠사슬로 연결해 놓았는데,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쇠사슬에 목부분이 걸려 넘어지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경기장 진입로 차단시설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경기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해당 시청 종합경기장관리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sup>2)</sup>

국내에서는 야구경기도중 선수의 파울볼에 관중이 맞아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던 어린이가 파울볼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치고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고,<sup>3)</sup>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

2) 대판 1993. 3. 9. 선고 92다54715.

3) 2008. 5. 21. 히어로즈-SK (제주오라구장).

생하여 관중의 이마가 찢어진 사례도 있다.<sup>4)</sup> 이밖에, 관중이 관중석으로 날아든 파울 볼을 잡기 위해 뛰어 오르다 실족해서 높이 약 2m 정도 스탠드와 펜스 사이에 마련된 공간으로 떨어지면서 발목이 골절되는 증상을 입은 경우도 있다.<sup>5)</sup>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관중이 경기장 내에서 파울 타구에 맞았을 때는 본인 책임으로 보았다. 입장권 뒷면의 약관에도 '운동장 내에서 본인의 부주의(연습 혹은 경기중 파울볼 등)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었다.<sup>6)</sup> 다만 구단이 도의적 책임에 따라 당일 부상에 대해서는 응급치료를 해주는 상황이다.

2001년 서울지방법원은, 아동을 데리고 야구장에 왔다가 보호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여 아동이 다쳤을 경우에 귀책사유는 관람객에게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물망을 파손하고 날아온 공에 의해 관중이 다쳤을 때에는 구단 과실로 인정하고, 그물망 위로 날아온 공에 다치면 관람객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보험 약관은 배상책임이 구단에 있을 경우에 최고 1억원을 배상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야구장 내에서의 사고가 발생하고 과실유무를 떠나서 구단이 치료해줄 경우 최고 3백만원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의 많은 유사 사례들은 이 판례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운동경기중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경기장 내에서 많은 관중들이 무질서하게 입장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예가 있다. 2005년 10월 3일 지방의 한 공설운동장에서 공연행사가 있었는데, 경기장에 입장한 관중들에 대한 질서유지소홀과 부적절한 대응으로 11명이 사망하고 162명이 부상당하는 큰 사고가 있었다. 이후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이 논의된 바 있다.

## (2) 관중의 경기장 난입 및 폭력행위 등에 관한 사고사례

경기장에 관중들이 난입하여 폭력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선수들에게 위협을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축구장에 일부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 외부에서 선수단의 버스 등에 물병을 투척하고 출발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sup>7)</sup>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해당 구단에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7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프로연맹은 해당 구단이 경기·심판규정 제21조(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

4) 2008. 10. 17. 두산-삼성 플레이오프 2차전(잠실구장).

5) 2005. 5. 18. 한화-기아(청주야구장).

6) 그러나 이러한 약관에 대해서,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내용이라고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7) 2009. 7. 12. 전북-수원(전주월드컵경기장).

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sup>8)</sup> 대법원은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1,000여명의 관중들이 야구팀 버스에 들과 빈병 등을 던지는 등의 폭력사태가 그 경위와 장소 및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와 그 면책사유 중 “소요”의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9)</sup> 이에 따라서 경기장에서 발생한 이러한 사건들은 보험자의 면책이 불가능한 ‘폭력사건’으로 해석한다.

또한 경기장 내부에서 관중이 난입하여 선수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프로야구 경기에는 관중석에서 장난감 칼을 들고 남성관중이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경기에서 상대팀의 승리가 확정되자 경기장은 물병 등이 날아와 선수들이 황급히 피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선수단의 버스는 날아온 소주병에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였다.<sup>10)</sup> 또한 술에 취한 관중이 야구장의 불펜 앞에서 경기를 보는 선수들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고 물병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저질렀고, 중단을 요구하는 선수들과 마찰이 생겨 화가 난 관중이 경기장으로 뛰어내려와 불펜까지 들어간 사건도 있었다.<sup>11)</sup>

축구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였다. 심판 판정에 불만을 가진 관중들이 그라운드로 물병을 던졌고, 이 과정에서 한 선수가 물병을 관중석으로 되던지자 흥분한 일부 관중들이 그라운드로 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해당 구단은 경기 중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을 포함해 115명의 안전 요원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하면서, 지방 경찰에 안전 보호 인력을 요청했지만 프로축구리그가 ‘수익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sup>12)</sup>

이러한 사례는 최근에 발생한 것만은 아니다. 이미 1980년대 프로경기가 출범하면서 관중들의 폭력사태가 발생한 바 있는데, 1986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원정팀이 역전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하자 흥분한 홈 관중 2,000여명이 야구장을 떠나지 못하고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45인승 원정팀 선수단 버스에 불을 질렀던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불은 20여분 만에 대형 버스 한대를 완전히 태우고 말았고, 관중들은 이후 밤 12시까지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이 최루탄을 쏜 뒤에야 해산했다.<sup>13)</sup> 이 사건은

8) 프로연맹이 지적한 경기·심판규정 제21조는 홈팀이 경기 관계자 및 관중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9) 대판 1991. 11. 26. 선고 91다18682.

10) 2009. 5. 6. 롯데-SK(사직구장)

11) 2009. 5. 13. 롯데-삼성(사직구장)

12) 2007. 10. 21. 6강 플레이오프 울산-대전(문수월드컵경기장).

이전에 같은 팀 사이의 경기에서 당시 원정팀이었던 선수에 대해서 홈 관중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 사건에 대한 보복성이 짙은 것이었다.<sup>14)</sup> 또한 90년대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이어졌는데, 특히 경기장 안으로 500여명의 관중들이 난입하여 집단 난투극을 벌이며 1시간 이상 경기가 지연되었던 사례도 있다.<sup>15)</sup>

경기장 내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하였던 경우도 있다. 2006년 프로축구경기에서는 4만여명의 대관중이 입장한 가운데, 원정 응원단이 전광판 옆에서 상대팀의 현수막에 방화하여 큰 소란이 있었다. 당시 홈경기를 주최한 구단은 방화 혐의로 두명의 원정 응원단을 고발하여 경찰의 수사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sup>16)</sup> 방화를 저지른 응원단은 곧바로 사실을 자백하였고, 홈구단에서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으나, 원정구단은 해당자에 대해서 무기한 경기입장금지 조치를 내렸다.

## 2. 국내에서 경기장 및 관중의 안전에 대한 법적 대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의 경기장 시설 및 관중의 폭력 사고에 대한 예가 존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형사범죄로 강력하게 취급되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법에서도 이와 같은 경기장 내의 안전이나 폭력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법령이 제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몇몇 판례에서는 어떠한 사건에 관하여 누구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가 등에 관하여만 판단하였을 뿐이다. 만약 폭력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민/형사법적인 고려를 통한 손해배상 또는 처벌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폭력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 및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업무방해 등의 처벌과 방화의 경우 공용건조물 방화 등의 사건으로 처리할 뿐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예방차원의 특별한 법률적인 대책은 없다.<sup>17)</sup>

이와 관련하여, 각 경기 관련 단체의 내부적인 규정들을 통하여 경기진행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홈경기의 구단이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13) 1986. 10. 22. 한국시리즈 3차전 해태-삼성(대구구장).

14) 1986. 10. 19. 한국시리즈 1차전 해태-삼성(광주구장).

15) 1990. 8. 26. LG-해태(잠실구장).

16) 2006. 8. 23. 서울-수원(상암월드컵경기장).

17) 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문제를 야기했던 자들에 대해서 경기장 출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입장시 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지 못했다.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의 상벌규정을 살펴보면, 이와 관련한 몇 가지 규정들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제31조 긴급제재의 내용은 '경기장에서의 폭력행위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제재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이러한 긴급제재는 '경기와 관련하여 선수, 심판 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경기장 질서유지 및 원활한 대회진행을 위해 대회조직위원회가 선수, 임원, 관중 등에 대해 취하는 현장에서의 즉각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긴급제재 대상행위자에 대해 퇴장조치와 함께 해당 대회의 잔여경기 출전을 금할 수 있고, 필요시 법질서 유지기관을 통한 제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관중난동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정 팀의 개입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팀에 대해 긴급제재와 관계없이 추가로 불이익 또는 징계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상벌규정에서 나타난 유형별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유형별<sup>18)</sup>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선수와 지도자 및 심판, 그리고 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두었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관중 등에 대해서는 '기타 사항'에서 '본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기장 질서위반, 관중난동 등 징계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해당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sup>19)</sup>

앞서 살펴본 2005년 지방 공설운동장의 참사에 대한 교훈으로, 관계 당국은 대규모 공연이나 행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였다.<sup>20)</sup> 이 매뉴얼은, 공연 및 행사의 계획단계와 시작단계, 관중 입장과 행사진행 단계, 종료단계에 따라 행사진행요원과 주최자, 관람객이 함께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안전 매뉴얼에 따라서 각종 경기장이나 행사장에서 대규모 공연 등을 기획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소방, 경찰 등이 모두 안전수칙을 충실히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 III. 영국에서의 경기장 및 관중의 안전에 대한 법적 대응 노력

#### 1. 1989년 축구 관중법(Football Spectators Act 1989)의 제정

##### (1) 축구관중법의 제정 배경

18) 상위유형인 질서 위반행위 아래에 경기장 무단난입, 시설 및 기물 파괴, 폭력조장, 선동 및 오물투척, 관중석 난동 방조, 건전한 응원풍토 위반 등의 세부적 유형을 구분하였다.

19) 대한축구협회 상벌규정 징계유형/기준 및 양식.

20) 소방방재청, 문화관광부, 경찰청, 전문가 합동,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 개발-", 2007. 7. 7. 소방방재청 보도자료.

영국은 100여년이 훨씬 넘는 근대축구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영국의 축구는 하나의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까지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1992년 프리미어리그의 출범과 함께 많은 관중 동원에 따른 수입 및 전 세계적인 중계방송 수입 등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까지 크게 성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정부는 축구 관전에 관한 규제 및 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다양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영국에서 축구 경기에 대한 열기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이른바 '홀리건'(Hooligan)이라 불리는 영국 관중들의 경기장 내외에서의 폭력사건이 빈번해졌다.<sup>21)</sup> 특히 1989년 4월 15일 힐스보로(Hillsborough) 대참사<sup>22)</sup>로 인하여, 축구장 내의 경기장 폭력과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이것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서 영국 정부의 대응책이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러 가지 운동 경기 중에서 특히 축구 경기 관련 폭력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영국 내에서는 운동경기 등의 안전에 관련된 법규들이 존재하였으나, 축구장의 폭력과 안전에 관한 사회문제화로 인하여 여기에 관한 특별한 법적 취급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영국에서 제정된 이른바, 1989년 축구관중법(Football Spectators Act 1989)<sup>23)</sup>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sup>24)</sup>

## (2) 축구관중법의 일반적인 내용

본 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개최되는 축구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축구장에 입장하

21) '홀리건'의 사전적 의미는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로서, 원래는 거리의 불량배나 불량아 등을 일컫는 속어였다. 홀리건과 관련된 대형인명사고의 예는 전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데, 1964년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축구경기에서 318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부상당한 사고, 1969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의 축구경기로 인하여 구타사고와 전쟁으로 약 300여명이 사망한 사고, 1998년 영국과 튀니지의 월드컵 경기 이후 양국 응원단 수십명이 대립하여 34명이 부상을 입고 시내상점이 파괴 및 약탈당하는 사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1998년 월드컵 경기 이후 1000여명의 독일 응원단이 경찰과 충돌을 일으켜 프랑스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도 홀리건에 의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김태환·권정훈, "월드컵 행사 시 홀리건(Hooligan)에 대한 안전 대책", 2002년도 한국 화재·소방학회 추계학술논문발표회, 323면].

22) 셰필드 웬스데이와 리버풀 FC와의 축구경기에서 96명의 리버풀 관중들이 경기장 내에서 한꺼번에 사망한 사고.

23) 1989년 11월 16일 제정.

24) 축구와 관련하여 축구관중법 이외에도 영국에서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마련된 관련 법률들은 다양하다. 1985년 스포츠경기(알콜통제 등)법, 1986년의 공공질서법, 1991년 축구범죄법, 1994년 형사정의와 공공질서법, 1998년 범죄와 무질서법, 1999년 축구(범죄와 소요)법 등이 그러하다.



는 관중들을 규제하고, 이를 위해 축구장에 관중의 입장을 허가 및 통제하는 구단 등에 대한 면허제도를 실시하여 면허를 받은 회원들을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한 규정들을 명시하였다. 즉, 축구경기에서 관중들의 입장을 관리하는 구단에 대한 면허를 부여하는 대신에 이들에 대한 안전지도 및 기준강화를 통하여 관중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안전한 축구관전 질서를 유지하고 축구와 관련된 폭력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정인들(이른바 '홀리건')에 대한 법원의 명령처분 부과에 관한 규정들이 본법에 포함되었다. 특히 잉글랜드와 웨일즈 밖에서 개최되는 축구경기와 관련한 폭력이나 소요 등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범위의 유죄판결을 받는 자에게 몇몇 제한을 가하는 사항들을 명시하였다.

본 법은 1975년 제정된 운동경기장 안전법(Safety of Sports Ground Act 1975)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축구경기와 관련하여 보완하였다. 특히 본 법은 축구장의 폭력과 관련된 특수성에 따라 축구장의 안전에 관련된 별도의 규제 규정들을 둔 것이 특징이다.

### (3) 축구관중법의 구성과 구체적인 사항들

본법은 총 3개장 27개조의 본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개최되는 축구경기에 관련된 규정이며, 제2장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밖에서 개최되는 축구경기에 입장하는 자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3장은 금지명령에 관한 불복이나 관련 절차 및 서류 등 본법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본문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sup>25)</sup>

제1장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축구경기
서 문
제1조 본 장의 범위와 해석
국내 회원의 감독
제2조 축구경기의 무허가 입장에 관한 위반
제3조 축구 회원의 감독
제4조 국내 회원의 관리계획: 제정, 승인, 변경 등
제5조 국내 회원의 관리계획: 내용과 별치
제6조 본 계획의 적용
제7조 자격의 박탈

25) 김봉철, "영국 축구장 폭력 및 홀리건 규제법규의 입법 동향 - 축구관중법 제정에서 축구(난동)법 제정까지", 최신외국법제정보 2007-2, 한국법제연구원, 2007, 41면.

관중입장허가 면허  
제8조 축구면허의 감독  
제9조 무면허 관중 입장 허가에 관한 위반  
제10조 관중입장허가 면허: 일반  
제11조 면허에 관련된 장관의 요구권한  
제12조 관중입장허가 면허: 취소 및 정지  
제13조 축구장 안전과 관련된 감독청의 권한

제2장 잉글랜드와 웨일즈 외부의 축구경기  
서 문  
제14조 본 장의 범위와 해석  
규제명령  
제15조 규제명령  
제16조 명령의 효력  
제17조 규제명령의 종결  
제18조 정 보  
신 고  
제19조 감독청과 지역 경찰의 기능  
제20조 신고 요구의 면제  
제21조 감독청의 기능: 부가규정들  
잉글랜드와 웨일즈 외부에서의 위반행위  
제22조 잉글랜드와 웨일즈 외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  
일반규정  
제23조 관련 신고와 불복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법인의 위반행위  
제25조 서류의 제공  
제26조 재정규정  
제27조 명칭, 발효, 불복, 범위

본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축구경기'란 원칙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개최되는 축구경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기 중에서 '특정한 축구 경기'는 주무장관의 명령<sup>26)</sup> 등으로 특정되는 축구경기를 말한다. 이러한 명령은 그 규율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경

26) 이러한 주무장관의 명령은 의회의 결정으로 취소가능한 행정명령이다[1989년 축구관중법 제1조 10항].

기에 대해서 시간과 장소 등을 명시하여 특정해야 하며, 관중들은 이러한 특정 경기에 있어서 입장을 허가받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본 법은 해당 명령 등이나 본 법이 적용되는 '특정 경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경기시작 2시간 전이나 공시한 경기시작 시간 2시간 전, 또는 관중들이 처음 입장한 시간 중 가장 빠른 시간을 시작으로 하면서 경기 종료 후 1시간 후를 그 시간적 범위로 한다. 또한 특정된 일시를 경기시작 시간으로 공시한 경우에 다음 날로 연기되었거나 개최되지 않는 한, 이러한 기간은 공시 일에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개시되고 경기 종료 1시간 후에 종료된다.<sup>27)</sup>

또한 본 법에서 '관중'은 축구장에 입장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 주된 목적이 경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본 법을 적용하는 '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한 축구경기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받은 관중'은 회원관리계획에 의한 특정한 자이거나 관련 기관에 의해 경기입장을 허가받은 자 등이다.<sup>28)</sup> 만약 허가받아야 할 자가 무허가로 축구경기장에 관중으로 입장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위반으로 간주하여 1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부과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상당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자를 영장없이 체포할 수도 있다.<sup>29)</sup>

감독청은 축구회원 감독기관을 설치하여 '축구회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회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감독기관은 법인으로 될 수 있으며, 법인인 경우 회장 및 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조직한다. 6명의 회원은 주무장관의 승인(4명) 또는 주무장관의 지명(2명)으로 구성한다.<sup>30)</sup> 또한 감독기관은 정기적으로 주무장관에게 직무수행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감독기관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축구협회 또는 리그와 협의해야 하고, 응원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대표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감독기관은 주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sup>31)</sup> 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회원자격의 부여와 제명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회원자격의 부여 및 관리는 관중의 경기장입장에 대한 통제를 위한 전제가 된다. 본 법상의 여러 가지 특정인에 대한 경기장입장의 금지 명령이나 해외출국 등의 제한이 회원의 관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7) 1989년 축구관중법 제1조 8항.

28) 1989년 축구관중법 제1조 6항.

29) 1989년 축구관중법 제2조.

30) 1989년 축구관중법 제3조.

31) 1989년 축구관중법 제4조.

관리계획과는 별도로, 축구장 내의 관중입장 관리의 면허를 부여하는 감독기관이 별도로 존재한다. 면허감독기관은 회장과 4인 이상 8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감독기관으로부터 면허를 얻은 자는 위의 특정인에 대한 축구장 입장을 허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sup>32)</sup> 면허감독기관은 축구장의 구체적인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우선 1975년 운동경기장 안전법에 따른 사항들을 지역 당국에 요청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감독기관은 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조사관을 통하여 축구경기장의 시설과 관중입장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사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sup>33)</sup>

본 법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 외부에서 개최되는 축구경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자를 관리하거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잉글랜드 또는 웨일즈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외부지역에서 개최되는 축구경기에 관중 등으로 입장하였다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미 관리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2년의 이내의 기간에 축구와 관련된 규제 또는 금지명령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 잉글랜드 및 웨일즈 거주자가 외부지역에서 일정한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법원이 출두명령을 내리거나 구속영장도 발부할 수 있으며, 축구경기에서 폭력이나 소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명령을 부과하게 된다.<sup>34)</sup> 이러한 규제명령이란, 차후 개최되는 특정한 축구경기 관람을 위해서는 미리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sup>35)</sup> 이러한 규제명령을 통해서 관리대상자들이 축구경기에 있는 시기에 어디에 존재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 2. 2000년 축구(소요)법(Football (Disorder) Act 2000)의 제정

### (1) 축구(소요)법의 제정 배경

1989년 축구관중법의 발효와 정부의 노력으로, 심각한 축구장 폭력에 의한 대참사는 영국 내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크고 작은 각종 축구장의 폭력 행위 또는 관중의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를 억제하는데 있어서 축구관중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또한 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한 위기감도 적지 않게 늘어났다.

32) 1989년 축구관중법 제8조.

33) 1989년 축구관중법 제13조.

34) 1989년 축구관중법 제22조.

35) 1989년 축구관중법 제19조.

영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롭게 등장한 축구장 유해상황 발생유형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축구장 폭력 관련 법률인 축구(소요)법(Football (Disorder) Act 2000)<sup>36)</sup>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2000년은 유럽지역에서 축구선수권대회인 '유로 2000' 등 국제대회가 개최되는 시기이고, 이후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국제대회도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외원정에서 훌리건들의 형사적 문제발생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였다.

## (2) 축구(소요)법의 일반적인 내용

본 법은 기존의 1989년 축구관중법 중에서 일부 규정들을 보완하거나 개정하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축구장 폭력사건 위반행위자들에 관한 정보의 관련기관 공유 및 공개에 관한 규정 및 1997년 경찰법(Police Act 1997)의 개정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축구장의 폭력이나 소요사태 및 테러방지를 위한 경찰권행사 및 형사처벌의 확대 또는 강화에 있다. 또한 여러 가지 국가차원의 정보관리 및 축구장 입장 등에 대한 금지명령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해당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관리와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목적도 있다.

1989년 축구관중법은 축구장의 전반적인 안전과 관중입장 관리 등을 위한 면허제도 등이 제정의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본 법은, 훌리건 등 축구장에서 강력사건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경찰권을 확대하는 등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에 특히 많은 내용을 보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 (3) 축구(소요)법의 구성과 구체적인 사항

본법은 본문 7개조와 3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sup>37)</sup>

- |                      |
|----------------------|
| 제1조 축구경기: 폭력과 소요의 방지 |
| 제2조 NCIS에 의한 정보의 공개  |
| 제3조 부가규정             |
| 제4조 비 용              |
| 제5조 발효와 기간           |
| 제6조 범 위              |
| 제7조 축소명칭             |

36) 2000년 7월 28일 제정.

37) 김봉철, 전제논문, 42면.

본 법 제7조까지의 본문 조항들은, 특별한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아래 부칙들에 따라 서 개정되는 여러 법규들의 내용을 조화시키거나 부가규정을 두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부칙 내용이 본 법 내용의 대부분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부칙 1. 1989년 축구관중법의 개정

부칙 2. 일부개정들

부칙 3. 불 복

2000년에 제정된 축구(소요)법은 축구경기에 있어서 폭력과 난동 등의 소요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정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예방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축구관중법의 여러 조항들을 개정하였다. 즉, 본 법의 부칙에서는 축구관중법의 2장 내용을 개정하여 벌칙을 강화하고, 폭력사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특정인(이른바 홀리건)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국내축구경기와 국제축구경기에 입장할 수 없는 금지명령(banning order)의 결합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감독청이 해당자에 대하여 영국 외부에서 개최되는 축구경기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여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상황에서 금지명령을 제정하기 위해 24시간 이내에 지방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거나 구금도 가능하게 하는 등의 강력 대책이 본 법을 근거로 마련될 수 있다.<sup>38)</sup>

이밖에 영국 국립범죄정보국(NCIS, 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이 수집 및 보유하게 되는 범죄정보 중에서 축구관중법 제2장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특정한 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홀리건 등 관심대상자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경찰권 발동 등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sup>39)</sup>

본 법에 따라 개정되는 다른 법은, 축구관중법 이외에도 형사소송법(Criminal Appeal Act 1968), 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법률구조법(Legal Aid Act 1988),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등이 있다.<sup>40)</sup>

### 3. 1989년 축구관중법과 2000년 축구(소요)법에 의한 금지명령 등

38) 2000년 축구(소요)법 제1조.

39) 2000년 축구(소요)법 제2조.

40) 2000년 축구(소요)법 부칙 2.

## (1) 금지명령 등 특정인에 대한 관리

축구관중법 및 축구소요법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금지명령(banning order)에 관한 사항들이다. 금지명령이란, 특정인에 대하여 경기장의 출입을 제한하고 축구관람을 금지하는 명령을 말한다. 이러한 금지명령은 자유의 제한을 전제로 하는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법률상의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요건으로는 첫째, 해당자가 축구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것,<sup>41)</sup> 둘째, 유죄판결이 특정한 축구경기과 관련이 있을 것, 셋째, 법원에 의해 관련성이 선언되었을 것, 넷째, 폭력과 무질서 예방에 도움이 될 것 등이다.

2000년 축구(소요)법에 의해 개정된 1989년 축구관중법 제14B조는, 홀리건 규제를 위한 공권력 발동권을 규정하였다. 우선, 경찰은 금지명령을 적용하여 축구장 폭력 등의 경력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특정인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축구경기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외부에서 개최되는 축구경기에 그러한 자가 입장하기 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금지명령 등은, 법원<sup>42)</sup>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즉, 법원은 이전에 영국(United Kingdom, 잉글랜드와 웨일즈 외에도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포함)과 영국 외에서 축구장 폭력 또는 소요사건을 야기하거나 관련된 적이 있던 자에 대해서 이러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법원은 해당자에게 여권을 제출하도록 하며, 기록 등을 위해서 사진촬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축구관련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부가적으로 금지명령이 취해질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사항을 금지명령기관(The Football Banning Orders Authority)과 경찰서장, 축구협회 등에 제공하며, 이와 같이 공유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인의 축구경기 입장권 신청여부를 알 수 있고, 입장권 발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41) 축구관련범죄란, 1989년 축구관중법 목록 1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첫째, 경기장의 입장 및 퇴장시에 규정된 축구경기과 관련된 기간동안 행해진 인종차별, 추행, 경악 또는 혐오·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폭력이나 위협 등의 범죄, 둘째, 법원에 의해 축구경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언된 범죄로서 규정된 축구경기장을 오가는 동안에 고속도로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행해진 알콜 관련 등의 범죄, 셋째, 1991년 축구범죄법의 범죄(정당한 사유없이 경기장이나 관중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불손하거나 인종주의적 행위, 법적인 권한이나 사유없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등), 넷째, 권한없는 사람의 입장권 판매행위, 다섯째, 이러한 범죄들의 시도·음모·선동 및 교사·방조행위 등이다.[윤동호, "영국의 축구관람금지 명령제도에 관하여", 「형사정책연구소식」 제70호, 2002 참고].

42) magistrates' court,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최하위 법원으로 우리나라의 지방법원에 해당함.

(2) 출국금지과 조사권한

2000년 축구(소요)법에 의해 개정된 1989년 축구관중법 제21A조와 제21B조는 영국 외부의 축구경기에 관전하기 위해 출국하려는 특정인을 경찰이 조사하거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법 제21A조에 따르면, 과거에 축구장 폭력사건 경력이 있고 폭력사건과 관련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판단하는 경우에, 경찰은 최장 6시간까지 특정인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출국금지 조치와 금지명령 적용을 위한 예비적 목적이다. 또한 본법 제21B조에 따르면, 경찰은 위와 같은 자에 대해서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출석할 것을 통지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출국금지과 관련되는 조사권한은, 유럽 내에서 다양하게 개최되는 축구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출입국하는 내외국인이 많아지면서, 폭력행위 등으로 과거 질서문란행위를 했던 자들을 미리 판별하여 경기장 내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N. 결어 - 경기장 및 관중의 안전에 대한 입법 필요성과 대응방향**

영국은 축구장 내의 폭력행위 방지와 홀리건 등 특정인 관리를 위한 일련의 법률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최근까지 힐스보로 대참사와 같은 사건이 재현되지는 않았다. 또한 해외원정 경기에서도 과거와 같이 영국인 홀리건에 의한 폭력행위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홀리건 관리와 관련하여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지적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국의 축구폭력 규제 내용은 다른 유럽의 국가들이 이와 유사한 목적의 법률을 제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축구장 관련 폭력 사고로 경찰과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 이후에, 이탈리아 정부가 축구장 폭력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예가 모델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영국 내에서는 홀리건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서의 축구경기가 과열되면서 현지 경찰의 영국 축구 관중들에 대한 과잉진압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2년 월드컵 이후 많은 프로 및 국제축구대회 개최로 스포츠 관전문화의 성숙과 안전관리에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경기장에서 경기장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관중의 경기장 난입, 방화 및 폭력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안전수칙이나 매뉴얼이 만들어졌을 뿐, 영국과 같이 경기장에서 관중들의 안전과 폭력방지를 위한 입법적 대응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국내의 프로축구 경기에서도 특정 경기에만 6만명에 육박하는 관중이 입장하고 프로야구는 매진되는 경기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영국과 같은 경기장의 사고 예방 및 특정 훌리건 관리 법규의 제정 필요성에 시사하는 바 크다. 다만, 영국 관련법상 금지명령과 같이 특정인의 축구경기장 입장 및 해외출국 등을 제한하는 규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그리고 국민의 자유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이것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영국과 같이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관련 기관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규제명령이 행정제재인가 형사제재인가의 법적 성격도 확정하여 관련 사항과의 조화도 유지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동규·김영갑, “축구관중에 비취진 폭력적 집합행동의 정체 찾기”,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20호, 한국사회체육학회 2003
- 김봉철, “영국 축구장 폭력 및 훌리건 규제법규의 입법 동향 - 축구관중법 제정에서 축구(난동)법 제정까지”, 『최신외국법제정보』 2007-2, 한국법제연구원, 2007
- 김태환·권정훈, “월드컵 행사 시 훌리건(Hooligan)에 대한 안전 대책”, 2002년도 한국 화재·소방학회 추계학술논문발표회
- 윤동호, “영국의 축구관람금지 명령제도에 관하여”, 『형사정책연구소식』 제70호, 2002
- 이장영·강효민, “집합행동으로서 경기장 관중폭력 행동에 관한 사례 연구 : 스포츠미디어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00
- 대한축구협회 상벌규정 징계유형/기준 및 양식.
- 소방방재청, 문화관광부, 경찰청, 전문가 합동,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 개발-”, 2007.
7. 7. 소방방재청 보도자료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afety Issues of the Spectators at Sports Events

Kim, Bong-Chul

*Lecturer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Kyonggi University*

In Korea, it is popular to watch the sports events at a stadium these days.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accidents or violences in sports events, the legal system of Korea is not enough to protect the spectators. After several international sports events such as the Olympic games and the World Cup in recent years, the safety issue of the spectators is becoming one of the main issues considering terrorism and violences at sports events.

The study consists of two parts. In the first step,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several cases regarding the issues of violence and safety of the spectators at sports stadium in Korea. In the second step, the study introduce the legal situation of the United Kingdom. Focusing on the football spectators, the country has developed many national acts such as Football Spectators Act and Football (Disorder) Act to protect the spectators from any violence or accidents in football grounds. Those acts provide various types of rights and duties for the protection for the spectators. Sometimes the activities of the agencies or the government under the acts may restrict the rights of the people.

As a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act in Korea for the safety of the spectators like the UK. Although the act may include some provisions to restrict the rights of people, there must be clear limitations considering the Korean situation.

**Key words** : Football Spectators Act, Football (Disorder) Act, Safety of Sports Ground